

【별표 18】

차량 매각결정통지서

매수자	성명		사업자번호	
	소재지			
매도자	성명		재단고유번호	
	주소			
매각재산의 표시				
매각금액				
매각금액 납부기한				
「국세징수법」 제75조 및 「물품관리법」 제36조부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.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인수 및 폐차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
20 년 월 일				
매수자		귀하		